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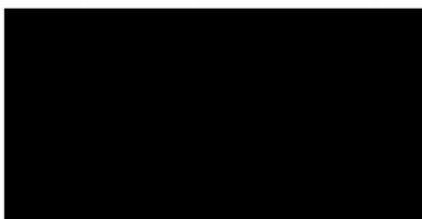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2192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일본국

최후주소 일본국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쵸메 1번 1호

중앙합동청사제6호관 A동(1 Chome-1-1 Kasumigaseki,

Chiyoda City, Tokyo 100-8977)

법률상 대표자 법무대신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14.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소외 고 길갑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32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일본제국(이하 '피고'로 통칭한다)에 의하여 동원되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이하 '위안소'라 한다)에서 피고 군인 등을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하였음이 인정되어, 위 법률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고인은 1924년경 전북 무주군에서 출생하였는데, 피고와 중화민국 사이의 중·일전쟁 중이던 1941년경 군인과 순사 2명에게 강제로 끌려가 나가사키 인근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었던바, 피고 군인들은 고인을 지하실에 감금한 다음 거꾸로 매달아 코와 입에 물을 강제로 넣거나 불에 달군 인두를 등에 지는 등 고문을 가하여 강간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고 군인들과 위안소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고인은 1998. 4. 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고인의 차남인 원고와 고인의 장남인 소외 [REDACTED] (1995. 12. 18. 사망)가 있었고, 소외 [REDACTED]의 대습상속인으로 그의 아들인 소외 [REDACTED]가 있었던바, 고인의 재산은 원고와 소외 [REDACTED]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피고가 침략전쟁 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였던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인바,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감금, 고문, 강간 등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행위로 고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재산을 승계한 원고에게 고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재판권 유무

국제관습법 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국가면제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으며,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행위는 피고가 불법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 중 일부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비록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은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 결정

가.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무릇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法庭地)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판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권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적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청구는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던 피고가 그 군대의 운영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시 불법적으로 점령 중이던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자행한 불법행위 중 일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인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종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던 점, ④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피고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송당사자의 공평 내지 재판의 적정,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준거법 결정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범(이하 '저촉규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의 법률관계가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9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인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구 섭외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왕(日王)의 칙령 제21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되어 오다가 군정법령 제21호를 거쳐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法例) 인바(1898. 6. 21. 법률 제10호), 원고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위 법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과 피고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과 일본법 등이 될 것이지만, 원고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음은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참조).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므로 이 사건의 저촉규범은 결국 현행민법이다.

5. 불법행위의 성립

가. 앞서 본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 및 민원 발생의 저감, 군인들에 대한 효율적 통솔 등을 위하여 위안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이를 제도화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고인은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고의 조직적이고 · 간접적인 통제 하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인들의 성적 행위의 대상(이른바 성노리개)으로서 상시적 성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제대로 된 의복과 식사를 보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유린당한 채 감시받는 생활을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현행 헌법(1946. 11. 3. 공포) 제9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헌법 성립 전의 피고 역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행위는, ① 피고가 그 당시까지 비준하였던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 부속서 제46조에 정한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교전당사자의 의무,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에서 금지한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납치 ·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규정, 국제연맹의 노예협약상 노예해방규정,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 여성의 강제노동을 즉시 폐지하기로 한 규정을 각 위반한 것이며, ② 여성과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인신매매금지조약상 미성년 여성을 기망, 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③ 피고의 공무원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구 형법 제226조 등을 위반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이 사건 행위의 성질 및 그 당시의 국제조약, 일반적인 국제관습법과 피고의 국내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당시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피고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범위 등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인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고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의 불법성 정도, 고인의 당시 연령 및 위안부로 고통 받은 기간, 고인이 입은 육체적·정서적 피해의 정도와 귀국 후에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은 2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고인의 아들이고 고인의 재산 중 2분의 1이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고인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중 1억 원(=2억 원 $\times$ 1/2)을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3. 14.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 전자서명완료



정본입니다.

2025. 4. 28.

청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문지원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